



‘한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프랑스의 훈령

I. 머리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면에서 늘어난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양국에 주재하는 자국인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목적으로 양국에 주재하는 주재원의 증가는 양국 정부로 하여금 이들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양국 정부는 ‘한불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L'accord de sécurité social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이하 ‘한불 사회보장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4년 12월 6일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프랑스 외교부장관과 반기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 이 협정에 조인하였다. 프랑스는 상원(2007년 2월 7일, 보고자 : 제라르 루자스 의원-Gérard Roujas), 하원(2006년 12월 12일, 보고자 : 장-뽀 바게 의원-JEAN-PAUL BACQUET) 양원의 심의 보고서를 거쳐 2007년 2월 14일 프랑스 상원의 최종 비준동의를 거쳐 1953년 3월 14일자 데크레 53-192(Décret relatif à la ratification et

à la publication d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souscrits par la France)와 2007년 2월 26일자 법률 2007-247(Loi autorisant l'approbation de l'accord de sécurité social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에 준거해 자크 시락(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상기 협정을 승인하였다. 협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프랑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2007년 현재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쌍방 협정을 39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총 6편 26조로 구성되며 일반 규정, 적용 법률 관련 규정, 장애, 노년 및 재해 수당 관련 규정, 프랑스 가족수당 관련 규정, 기타 규정, 경과규정 및 최종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협정의 발효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자 훈령 2007/225(Circulaire ministérielle N° DSS/DACI/2007/225 du 1er juin 2007)을 공포하



였는 바,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한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훈령¹⁾

1. 개요

2007년 6월 1일자 훈령 2007/225(Circulaire ministérielle N°DSS/DACI/2007/225 du 1er juin 2007)은 ‘한불 사회보장협정’과 동시에 2005년 2월 25일 조인된 ‘일불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3개의 부칙(부칙 I, II, IV)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 I 은 협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 II 는 재불 한국인의 프랑스 국내 분포도 및 거주 인구수에 관한 도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 IV 는 ‘한불 사회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작성되었던 기본적인 행정 조정 규정이 열거되어 있다.

노동사회부, 보건·청년·스포츠부, 예산·회계·공무부 장관이 하달하는 이 훈령은 사회보장 관련 정부기구, 즉 직장인 질병 보험 공단, 가족 연금 공단, 직장인 노인 보험 공단, 농민 상호 신용 금고, 특별 또는 자치 사회보장 금고, 유럽 및 국제 사회 보장 연락 기구, 직장인 퇴직 보조 제도를 위한 협회, 고위직 퇴직 연금 협회, 퇴직 연금 관련 민간 기관, 항해·항공업 분야 직장인

연금 기금 등의 책임자, 위생 및 보건 지방 담당 국장 및 각 도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훈령은 법안의 조정을 통해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애(예를 들면, 사회 보장 납부금의 이중 납부,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 탈퇴시 절차 및 적용 조건 등)를 제거함으로써 관련국의 주재원의 활동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국에 거주하는 주재원이 프랑스인과 같이 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평등성 원칙,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사회보장 기득권의 유지 및 취득중인 권리유지의 확인 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한다.

한편 이상의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프랑스 정부는 우선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를 12,170명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불 한국인은 즉, 12,170명 중 8,984명(전체의 73%)은 빠리, 베르사이유, 리용, 뚜르, 니스, 엑쌍 프로방스, 까다라슈, 마리냥, 보르도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메츠, 스트라스부르, 그르노블, 깡, 낭뜨, 뿔루즈, 디종, 앙제, 뿌와띠에, 님프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칙 II : 주불 한국 대사관 제공 정보에 기초, 2005년 기준). 이런 재불 한국인 통계 자료에 기초해 프랑스 정부는 각 지방의 사회 보장 관련 기관에 장래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도록 통고한다.

1) Circulaire ministérielle N0 DSS/DACI/ 2007/225 du 1er juin 2007

2. 절차

기본적으로 재불 한국주재원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종속되는 기간은 3년이며 한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한불 사회보장협정' 체결 전에 이미 프랑스에 주재하면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보험금을 납부한 한국 주재원의 경우 협정의 발효 후 이중납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미 프랑스에 주재한 주재원이 협정의 발효 후 한국에서 누렸던 본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유지하는 혜택을 부과하는 과도적인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전에 이미 프랑스에 파견근무 중인 한국기업의 주재원으로써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종속하면서 프랑스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동의의사를 표현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보험금 납부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근무 중 단기 파견 또는 장기 주재의 형식으로 프랑스 지사에 근무해야 한다.
- ② 협정 발효 전에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 ③ 협정 발효 후 프랑스 의료보험카드(Vitale : 비탈)를 반납해야 한다.
- ④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가입의 철회는 협정 발

효일(2007년 6월 1일) 이후에 가능하다.

위 조건을 충족한 재불 한국 주재원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가입 철회를 완료한 후 발생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효과는 당사자의 가족, 즉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 ②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L. 161-8조에 규정된 질병, 육아, 장애로 인한 사망 보험에 관한 권리는 소멸된다.
- ③ 철회기간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즉 철회일로부터 3년 동안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철회가 유효하며, 특정 조건에 의해 동일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탈퇴 절차는 의료보험카드의 반납으로 시작한다. 우선 당사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의료보험카드를 거주하는 지역의 질병 보험 공단(CPAM :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 반납해야 한다. 프랑스에 도착한 주재원이 이미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을 신청했으나 의료보험카드를 아직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의 반납없이 철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본인만이 신청가능하며 당사자가 속한 회사는 탈퇴신청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도 소유하지 않는다.

의료보험카드를 반납받은 질병 보험 공단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1) 확인

철회 신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 즉,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병력을 확인하도록 감독한다(만약 당사자나 그 가족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동안 허용된 보험금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지급된 보험금의 반납을 촉구하도록 한다). 보험 공단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당사자의 신원, 당사자의 가족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만일 가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족의 의료보험카드도 전부 반납해야 한다. 또한 보험 공단은 당사자가 가족의 의료보험카드를 실수로 반납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2) 통보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즉, 당사자의 거주지에 위치하며 당사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유럽 및 국제 사회보장 연락 중앙 사무소 또는 가족 연금 공단에 당사자의 탈퇴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탈퇴했지만 사회보험의 일부인 가족수당의 경우 두가지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다. 우선, 당사자의 배우자가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직업이 없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되어 온 가족수당은 취소된다. 반면에 당사자의 배우자가 프랑스회사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은 계속 지급된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가 프랑스 고용체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사자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허용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의 확인은 보험공단이 아닌 당사자나 고용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당사자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로부터 탈퇴했다는 인증을 받으며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L161-8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유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인증서의 교부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즉각적인 탈퇴를 의미하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및 질병 보험의 혜택도 소멸된다. 동시에 당사자 외 당사자가 속한 회사에 부과되어온 프랑스 사회보험 납부의무도 탈퇴확인서를 통해 소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외에 존재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가 속한 회사는 당사자 및 그 가족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런 입증 서류의 부재시 탈퇴효과는 소멸되며 당사자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카드의 반납 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로 부터의 탈퇴 효과는 협정 발효일인 2007년 6월 1일부터 발생한다.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